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94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비스표 삭제 및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특허법의 개정으로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 및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및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근거규정이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령에 반영되도록 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록원인서류에 등록권리자가 단독신청 승낙의사를 기재할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표법 조약과 상표법 싱가포르 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등록신청서 작성시 등록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여 등록신청 서류를 명문화하고 권리변동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하며, 고객편의를 위해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령에 반영하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는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허가, 등록지연)에 대한 심판은 심결 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록원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5조, 제20조, 제29조)

서비스표 정의 규정 삭제 및 조문 상호간 변경 조문 일치

나.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 및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제도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47조)

1)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영

2)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근거규정 분리 반영

3)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등록사항에 반영

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등록사항에 반영

다. 등록권리자 단독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5조)

등록원인서류에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라. 국제조약의 원활한 이행(안 제15조, 제20조)

상표법 조약에 규정된 상표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대상서류를 명문화 하고, 신청서 제출시 등록의 원인을 신청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권리변동에 대한 효과가

명확해지도록 함.

마.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안 제20조, 제34조)

‘출원인코드’라는 명칭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여 특허고객관리가 편리해지도록 함.

바.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등 제출 폐지(안 제22조)

등록제도는 권리이전·실시권 설정시 명확한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으나, 권리의 설정등록시 일부 청구항 포기, 정정심판청구시 등 일부 권리의 포기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권리의 일부말소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토록 함.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33, Fax: (042)472-3467

이메일: 20060090@korea.kr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시에 부

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에 대한 신청이 있

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6조제4항제2호부터 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제15조제2항과 제6항 그리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제22조제1항제1호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⑥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⑧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 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및 「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상표법」 제5조의26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권리전부 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록의 원인

제2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상품(「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101조에 따

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른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 등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2의2 및 3, 제2항의2의2 및 3, 제6조의제1항3의2 및 4, 제2항의3의2 및 4, 제47조의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p>	<p>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p> <p style="padding-left: 20px;">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p>

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4. (생략)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34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34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3.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② 「실용신안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제3조(등록사항)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2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④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3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
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
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
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86조의31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
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예고등록)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
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3. (생략)

<신설>

4. 「특허법」 제132조의3, 제1
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
조제1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
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
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
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
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
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
당한다]

제6조(예고등록)

①-----

-----.

1.~3. (현행과 같음)

3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
항에 따른 특허취소에 대한 신
청이 있는 경우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
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
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
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

다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3. (생략)

<신설>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③ (생략)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생략)

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② -----

-----.

1.~3. (현행과 같음)

3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상표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제15조(등록신청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제15조(등록신청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제22조제1항제1호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⑥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

서에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상표법」 제54조의2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 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서)

①~② (생략)

1.~2. (생략)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및 출원인코드(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 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가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서에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 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및 「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상표법」 제5조의26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

- 4. (생략)
- 5. 등록의 원인(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생략)
- 2. 지정상품(「상표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59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6.(생략)
 -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4. (현행과 같음)
- 5. 등록의 원인(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

- 1. (현행과 같음)
- 2. 지정상품(「상표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101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 ①-----

-----.
- 1.~6.(현행과 같음)
-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 ①~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13조에 따른다.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른다.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 ① 특허청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 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출원인코드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 신청)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 ① (생략)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 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 등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p><u>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u></p>	<p><u>1. 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u></p>
--	--